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912

발의연월일: 2022. 3. 21.

발 의 자:서영교·김민철·박재호

신정훈 · 양기대 · 오영환

윤재갑 • 이수진 • 임호선

장경태 · 한병도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해 자가 또는 치료시설에서 격리 중인 국민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본 선거일 당일 투표시간을 오후 6 시부터 오후 7시 30분으로 연장한 바 있음.

그러나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시간 연장에 대한 규정이 없어 격리자 등의 투표권 행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

또한, 격리자등이 오후 6시에 투표를 실시할 경우 투표관리에 있어 혼란이 가중되어 이에 대한 준비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음.

이에 사전투표에서도 투표시간을 연장해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하고, 연장된 투표시간을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로 변경하여 투표 관리의 효율을 추구하고자 함(안 제155조제6항 및 제7항). 법률 제 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5조제6항 본문 중 "본문에도"를 "본문 및 제2항 전단에도"로, "투표소"를 "투표소 및 사전투표소(사전투표기간 중 둘째날의 사전투표소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6시에"를 "6시 30분에"로, "7시 30분에"를 "8시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투표소에서"를 "투표소 또는 사전투표소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선거일 오후 7시 30분"으로"를 "'선거일 오후 8시"로"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第155條(投票時間) ① ~ ⑤ (생 第155條(投票時間) ① ~ ⑤ (현 략) 행과 같음) ⑥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⑥ ----본문 및 제2항 전단에도 격리자등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격리자등에 한정하 여서는 투표소를 오후 6시에 -----투표소 및 사전투표소 열고 오후 7시 30분에 닫는다. (사전투표기간 중 둘째날의 사 다만,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 전투표소에 한정한다. 이하 이 는 고령자 · 장애인 · 임산부 등 항에서 같다)-----6시 30분에 교통약자인 격리자등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 오후 6시 전에도 투표소에서 투표할 ---투표소 또는 사전투표소에서 수 있다. ⑦ 제6항 본문에 따라 투표하 는 경우 제5항, 제176조제4항, 제218조의16제2항 및 제218조 의24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 정 중 "선거일 오후 6시"를 각 각 "선거일 오후 7시 30분"으로 -----"선거일 오후 8시"로 본다.